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4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1.

발 의 자 : 김선민 · 서왕진 · 황운하
강경숙 · 차규근 · 박은정
정춘생 · 신장식 · 이해민
김준형 · 이주희 · 전종덕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평가체계는 의료 인력, 시설,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 지표와 전문가 위주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어,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는 이용자의 경험과 같은 수요자 측면에서의 질적인 평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제1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
경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건의료서비스 평가에 관한 적용례)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(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 ② · ③ (생 략)	제52조(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